

출석통지서

「변리사법 시행령」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적 사항	성명		등록번호	제 호
			생년월일	
	주 소			
출석 이유				
출석 일시		년 월 일 시 분		
출석 장소				

년 월 일

변리사자격·징계위원회 위원장

직인

[유의사항]

- 귀하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귀하께서 만일 위원회에 출석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위의 출석기일 2일 전에 의견서가 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
-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(담당부서, 담당자, 전화번호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